

- 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의료급여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2023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의료급여관리사,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채용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직종	인원	직무내용
의료급여관리사 (주민복지과)	공무직 근로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 사례관리: 신규수급자,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급여 연장일수 승인관리,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의사의 의료,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급여 상해요인 조사○ 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보건분야 (아동보호과)	공무직 근로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 발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위한 계획 수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관리○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서비스 최초 개입부터 종결까지)○ 분야별 역할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등※ 사업방향 및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업무 내용·범위 등 변동 가능

※ 근무부서는 인력운용 및 근무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가.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나. 거주지 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응시불가

※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계양구 해당분야(의료급여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는 예외로 함.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분야별 자격요건>

분 야	자 격 요 건
의료급여관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따른 <u>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u>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보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자격 취득 후, <u>해당분야(보건)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u>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여부 판단)

※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된 사람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계양구 거주민

※ 응시분야별 책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가 점

항 목	세 부 내 용						
취업지원 대상자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제1, 2, 4호</td> <td style="width: 50%;">제3, 5호</td> </tr> <tr> <td>면접점수 만점의 10%</td> <td>면접점수 만점의 5%</td> </tr> </table> <p>※ 취업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 증명서 제출(단,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p>	제1, 2, 4호	제3, 5호	면접점수 만점의 10%	면접점수 만점의 5%		
제1, 2, 4호	제3, 5호						
면접점수 만점의 10%	면접점수 만점의 5%						
다자녀 가구	<p>○ 다자녀(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에 한함) 가구 우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미성년 자녀 2명</td> <td style="width: 33%;">미성년 자녀 3명</td> <td style="width: 33%;">미성년 자녀 4명 이상</td> </tr> <tr> <td>면접점수 만점의 3%</td> <td>면접점수 만점의 5%</td> <td>면접점수 만점의 10%</td> </tr> </table> <p>※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본인 기준으로 발급</p>	미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3명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면접점수 만점의 3%	면접점수 만점의 5%	면접점수 만점의 10%
미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3명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면접점수 만점의 3%	면접점수 만점의 5%	면접점수 만점의 10%					
기 타	<p>○ 2017. 7. 20.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u>계양구 의료급여관리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u>에 한하여 면접점수 만점의 3% 가산점 부여</p>						

※ 2가지 이상의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가산 점수를 1가지만 적용

5. 보수 및 복무

가.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나. 보 수

구 분	보 수	수 당
의료급여관리사	월 2,152천원(1호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 2023년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금협약서 지급 기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보건분야)	월 1,871천원(1호봉)	

다. 복 무 : 계양구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6.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23. 5. 9.(화) ~ 2023. 5. 24.(수) ☞ 15일간

나. 원서접수 : 2023. 5. 22.(월) ~ 2023. 5. 24.(수) ☞ 3일간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인사관리팀(3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대리접수일 경우에도 응시자의 신분증을 지참할 것)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를 할 경우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032-450-5155)으로 반드시 확인전화 요망(등기송부 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주 소 : (우편번호 2106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계양구청 자치행정과 공무원 채용 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23. 5. 26.(금)

라. 면접시험 : 2023. 5. 31.(수)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6. 5.(월) 예정

※ 시험일정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계양구청 홈페이지(www.gyeyang.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

7. 응시자 제출서류 (별지 서식 출력 사용)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사.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참고 서식)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서식에 담당업무 등 기재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작성 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경력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근무경력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인정

당해 공무원 재직기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근무기간	×	당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	------------------	---	---------------------------------------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1부.

※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시험 응시일에 원본 지참

차.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카.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1부 (해당자에 한함)

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다자녀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계양구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문의 : 자치행정과 채용담당(☎ 032-450-5155)
- 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의료급여관리사 :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 032-450-6865)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아동보호과 드림스타트팀(☎ 032-450-5783)